

2003년도 공인교정기관 사후관리 실시계획

□ 실시 기본 방향

공인교정기관에 대한 최상의 신뢰유지를 위해, 교정기술력 제고와 교정성적서 및 raw data 관리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 및 관찰활동을 실시함

□ 실시 계획

- 실시 일시 : 2003년 연중 실시
- 대상 기관 : 한전기공(주)등 152개 기관
- 실시 방법
 - 사후관리팀 : 시스템평가사 1인 및 기술평가사 최소 1인 이상으로 구성
 - 선임평가사 책임하에 현장사후관리를 실시
 - 인정기구 직원은 관찰평가사로 참여
 - 소요 일수 : 1개 국가교정기관에 대해 2일간
 - 소요 비용
 - 국가교정기관 평가시 적용하는 평가수당과 출장비 산출기준을 적용
 - 비용은 사후관리 대상기관에서 부담
- 2003년 월별 교정기관 사후관리 세부계획 : 별첨

□ 주요 점검 내용

중 점 확 인 사 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최선진 수준의 교정기술력 확보 여부- 숙련도프로그램 참여 및 시정조치내용- 교정성적서, 기술기록 관리내역 및 성적서 발급량의 적정성- ILAC기준(EA 4/02)에 의한 불확도 산정- 국제기준(APLAC MR001 및 ILAC-G10) 요구사항

○ 일반요건에 관한 사항

-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실시여부
- 불만, 예방 및 시정조치 내용
- 조직 및 내부직원 변동사항
- 재평가 및 사후관리시 지적인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활동
- 품질방침 등 교정기관운영에 관한 변경사항
- 품질문서 및 기록 관리 등 품질시스템에 관한 사항

○ 기술요건에 관한 사항

- 교정성적서 및 raw 데이터 관리 내역
- 최고측정능력산출근거 및 불확도산출 능력
- 비교숙련도 참가실적 및 조치내용
- 인정분야 및 범위 재확인/유지여부
- 교정인력확보 및 기술력 유지여부
- 교정장비관리 및 소급성 확보여부
- 교정절차서 유효성 확보여부
- 적정 교정환경 유지여부 등

□ 부적합 교정기관에 대한 조치

- 부적합사항 확인 시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
- ILAC 부적합등급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“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” 제 31 조에 의거 처분
 - 3월 이내 개선명령
 -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표시를 위한 지침을 위반한 경우
 -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미실시/부적절하게 실시한 경우
 - 직원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내용이 부적절한 경우
 - 품질문서 및 기록관리 등 품질시스템운영에 있어 경미한 부적합사항
 - 교정방법과 절차에 유효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
 - 교정주기를 초과하였으나 교정장비로서 기능, 정밀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
 - BMC산출보고서 및 RAW데이터 관리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
 - 교정성적서 표기방법이 일부 잘못된 경우
 - 인정받은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 인정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
 - 조직 및 내부직원변동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
 - 숙련도 시험결과 이상값이 존재하였으나 적절하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 - 6월 이내 공인마크 표시정지
 - 기술인력, 교정설비, 환경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
 - 사후관리를 거부 및 방해한 경우
 - 기술책임자 및 기술직원이 없는 경우
 - 부적격자가 교정을 실시한 경우
 - 인정범위를 벗어나 인정로고를 사용한 경우
 - 교정성적서 및 교정기록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
 - 내부인력이 비해 과도하게 교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
 - 숙련도 시험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와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

- 공인기관 인정취소

허위로 교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

○ 공인마크 표시정지 이상 처분시, 청문기회 부여